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8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정일영 · 이해식
강준현 · 진성준 · 윤준병
한정애 · 박민규 · 허종식
박홍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·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이
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
례가 증가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법」과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초기 대응 및 심리
응급처치를 담당하고, 장기적인 정신건강 치료·재활에 대하여는 현행
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
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국
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방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
있어 재난대응인력 등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
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, 심리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등).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 “심리지원”이라 한다)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

15. 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에 따른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한 협력

제1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

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심리지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사람에게 심리지원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심리치료”를 “심리치료·재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심리상담 및 심리치료”를 “심리상담, 심리치료·재활”로 한다.

8.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 “심리지원”이라 한다)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
제7조(국가계획의 수립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13. (생략) <u>14. 재난 심리지원</u> <u>15. · 16. (생략)</u> ④ ~ ⑦ (생략)	제7조(국가계획의 수립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<u>14.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</u> <u>15. 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에 따른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한 협력</u> <u>16. · 17. (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)</u>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	제10조(실태조사) ① -----

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8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심리지원”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(생략)

2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

-----.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

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-----

-----사람에게 심리지원을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, 심리상담, <u>심리치료</u> 3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8. (생 략) ③ (생 략)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(생 략) 2.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<u>심리상담 및 심리치료</u> 3. 4. (생 략) ⑤ ⑥ (생 략)	-----<u>심리치료 · 재활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</u>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<u>심리상담, 심리치료 · 재활</u> 3. 4. (현행과 같음) ⑤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